

한국어교육센터 운영규정

제정 : 2016. 12. 09.

개정 : 2022. 04. 01.

담당 : 한국어교육센터(02-950-554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사업)	제3조(조직)	제4조(업무)
제5조(운영위원회)	제6조(위원장)	제7조(회의)	제8조(심의사항)
제9조(재정)	제10조(회계)	제11조(시설,장비)	제12조(위임규정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목적) 본 기관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) 한국어교육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)이라 하며, 본 규정은 한국어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2.04.01)

제2조(사업) ① 본 센터는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어학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22.04.01)

1. 어학교육 프로그램 개발
2. 외국어 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운영
3. 위탁교육 및 지역주민 외국어 교육
4. 외국어교육을 위한 시청각 자료의 수집, 개발 및 관리
5. 외국인학생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 센터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(개정22.04.01)

제2장 조 직

제3조(조직) 본 센터에 센터장, 사무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(개정22.04.01)

제4조(업무)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처장 이상의 교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22.04.01)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(개정22.04.01)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본 센터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학원 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)를 둔다.(개정22.04.01)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본 센터의 센터장이 된다.(개정22.04.01)

②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①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(개정22.04.01)
2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(개정22.04.01)

제4장 장학금

제9조(장학금) 본 센터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, 품행이 단정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세부사항은 한국어과정 운영세칙에 따른다.(개정22.04.01)

제5장 재 정

제10조(재정) 본 센터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총당한다.(개정22.04.01)

1. 수강료 수입
2. 기부금
3. 기타수입

제11조(회계) 본 센터 회계연도는 한국성서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(개정22.04.01)

제6장 시설 및 장비 운영

제12조(시설,장비) 본 센터의 시설, 장비 및 각종 자료의 활용과 관리는 본 대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하며, 필

요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(개정22.04.01)

제7장 보 칙

제13조(위임규정)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다.(개정22.04.0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일부터 시행한다.